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51
----------	-------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전용기·윤준병·손명수
강경숙·노종면·이학영
진성준·황정아·강준현
김 윤·백승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금품 등 대가를 매개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외형만으로 그 불법성이 완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 그럼에도 현행법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어, 초범 등에게는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규범적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공직 취임 및 피선거권 제한 등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1항).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 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u>징역</u> 또 는 <u>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u> <u>의 벌금</u> 에 처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 는 행위 등) ① ----- ----- ----- <u>징역</u>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